제 2387호
2015. 08. 0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공 고

제2015-527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
제2015-548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제2015-54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제2015-55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15
제2015-55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중구

2387호 34-2 2015.08.05.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527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5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구세기본조례상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규정 정비

2. 주요내용

ㅇ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으로 상위법령 위배소지 및 알 권리 보장**

- 국세징수법 준용 규정을 적용하여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개정(안 제40조)

ㅇ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개선**

- 자치단체의 교부금전이 공탁되어 소멸시효 시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공탁”규정을 삭제하고 교부금전을 자치단체 구 금고예탁으로 일원 (안 제18조)

ㅇ **규제완화 관련 자치법규 정비추진**

-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 시 기한만료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정리 및 단서 신설(안 제9조)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안 제20조제1항, 제25조, 제30조~제32조)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한 인용조문 명시(안 제15조, 제23조, 제48조)

3. 의견제출

ㅇ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세무1과, 전화 : 3396-5102, FAX : 3396-8695, E-mail : lss0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7호 34-4 2015.08.05.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6조에”를 “법 제26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단,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미납구세 등의 열람)①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교부금전의 예탁)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67조 및 제68조”를 “법 제80조 및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제48조 중 “법 제141조”를 “법 제14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제9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 장) ① ------법 제26조제1항에 ------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 단,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①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미납구세 등의 열람)①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① ~ ② (생략)	제18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구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제20조(구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등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 ----- 법 제80조 및 조례 제22조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구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소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주민 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삭 제>
제40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0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1개월간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 제1항 각 호 ----------.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54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량제 봉투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실화

○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조항을 고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상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안 제40조)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안 제20조 제2항 관련 별표 3)

- <별표 3> 종량제 봉투가격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453, FAX:3396-8748, 메일:ecocbj@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 임 : 1.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른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별표3 종량제 봉투 가격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규정된 시기 도래 시 자동 인상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과태료)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른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

현 행

〔별표 3〕(개정 2003.3.18., 2012.5.7., 2014.9.24.)

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제2항 관련)

1. 일반종량제봉투

○ 생활폐기물용

용 량	판 매 가 격
5L	80원
10L	170원
20L	340원
30L	510원
50L	850원
75L	1,270원
100L	1,700원

○ 사업장폐기물용

용 량	판 매 가 격
50L	1,020원
75L	1,520원
100L	2,030원

2. 특수종량제봉투

용 량	판 매 가 격
50L	1,010원

개 정 안

〔별표 3〕(개정 2003.3.18., 2012.5.7., 2014.9.24., 2015.10.1.)

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1. 일반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용량	판 매 가 격 (원)	
	2015.10. 1. ~ 2016. 12.31.	2017. 1. 1. ~
5L	120	130
10L	220	250
20L	440	490
30L	660	740
50L	1,100	1,250
75L	1,650	1,880
100L	2,220	2,500

○ 사업장폐기물용

용량	판 매 가 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50L	1,800	2,000
75L	2,700	3,000
100L	3,600	4,000

2. 특수종량제 봉투

용량	판 매 가 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20L	1,840	2,040
50L	4,590	5,100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549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과징금의 부과)에 명기된 과징금 부과 규정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법령의 부존재로 인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과징금의 부과) 삭제

- 종량제 미 실시, 분리수거 미 실시, 혼합배출, 젖은 음식물 등의 반입 행위 과징금 처분 규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493, FAX:3396-8752, 메일:wwwww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 임 :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과징금의 부과)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과징금의 부과)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2. 재활용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3. 제12조를 위반하여 반입한 자. ②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552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중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5.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가. 구의회 부의 안건

구 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연락처)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주 택 과 (3396-5723)

나.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주관부서 또는 기획예산과 의회법제담당(☎3396-49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554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실화

○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 반영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업종에 따른 일괄 제외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함

2. 주요내용

○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제9조)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조례로 정함 (현행 :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 현실화 시기 : 2015. 10. 1.(1차), 2017. 1. 1.(2차)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안) ※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① 일반가정(단독·공동)

현재판매액		인상후 판매액			
		2015년 (1차)		2017년 (2차)	
ℓ	kg	ℓ	kg	ℓ	kg
50원	미규정	70원	100원	100원	130원

② 소형음식점

현재판 매액		인상후 판매액			
		2015년 (1차)		2017년 (2차)	
ℓ	kg	ℓ	kg	ℓ	kg
80원	미규정	100원	130원	140원	190원

○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 반영
-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 규정"을 조례상의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제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증명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다량배출사업장의 "공동처리" 신설에 따른 조례 정비(제16조)
- 별지 서식,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령의 조문을 준용(제16조, 제19조)
- 휴게음식점을 일괄 제외한 조례 제2조제3호 "다량배출사업장" 정의 수정(제2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위반사항 해소 ⇒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제외

○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 관련 환경부 조례준칙(안) 반영 (제9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은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수집·운반·처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463, FAX:3396-8750, 메일:kckch04090@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및 나목의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3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에 관하여 적용한다"를 "**에 적용한다**"로 한다.

제5조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36조제3호"를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를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를 "**다량배출사업자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제4항"을 "**제5항 및 제6항**"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하며, 구청장은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일시·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생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구분이 용이하도록 노란색으로 한다.”를 “**구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을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로 하고, “수거용기에 대하여는”은 “**수거용기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를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은 “**위반한 자에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을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도 해당하며,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위탁처리계약서 사본(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제16조제1항제5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를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2와 같다."를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 등에 관하여는"은 "**사항 등은**"으로 하며, "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 6. (생 략)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및 나목의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삭 제> 4. ~ 6. (생 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법 ----------에 적용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생 략) 1. (생 략)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 ④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제36조제1항제3호 ---_---------- ---------- 3. ---------- ----------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 ----------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⑥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다량배출사업자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제14조제5항 및 제6항 ----------.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⑤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전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하며, 구청장은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배출시간·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일시·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③ ---------- 생활폐기물배출자----------

1. ~ 2. (생 략) ④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④ ----- **생활폐기물**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생 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분이 용이하도록 노란색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운영주체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수거용기는**---------- ②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③ ----------**위반한 자에게**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생활폐기물배출자 ---------- 생활폐기물 배출자 ----------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 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 3. (생 략)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생 략)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1.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공동처

	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도 해당하며,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 ----------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위탁처리계약서 사본(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삭 제>

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신 설>	마.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1. ----------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 2. --------- 폐기물처리 신고자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② ----------사항 등은------법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 시행에 관한 사항은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별표 1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 (제9조제2항, 제3항 관련)

구분 / 단위	일반가정(단독·공동)				소형음식점[1]			
	2015년[2]		2017년[3]		2015년[2]		2017년[3]	
	ℓ	kg	ℓ	kg	ℓ	kg	ℓ	kg
1	**70**	**100**	**100**	**130**	**100**	**130**	**140**	**190**
2	140	200	200	260	200	260	280	380
3	210	300	300	390	300	390	420	570
5	350	500	500	650	500	650	700	950
10	700	1,000	1,000	1,300	1,000	1,300	1,400	1,900
20	1,400	2,000	2,000	2,600	2,000	2,600	2,800	3,800
40	2,800	4,000	4,000	5,200	4,000	5,200	5,600	7,600
60	4,200	6,000	6,000	7,800	6,000	7,800	8,400	11,400
120	8,400	12,000	12,000	15,600	12,000	15,600	16,800	22,800

※ 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및 나목의 일반음식점 중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 2) 2015년 :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2017년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별도 계약으로 정함

<별표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 사업장 또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 사용 배출, 일반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 봉투를 사용 배출 -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이쑤시개· 비닐· 쇠붙이· 병뚜껑· 유리조각· 플라스틱· 나무젓가락· 휴지· 조개껍질·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 합성세제·비누·잉크 등 화학물질 투입 금지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별표 2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이쑤시개· 비닐· 쇠붙이· 병뚜껑· 유리조각· 플라스틱· 나무젓가락· 휴지· 조개껍질·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 합성세제·비누·잉크 등 화학물질 투입 금지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삭 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계약비용	위탁업소 명	업 종	재활용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삭 제>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처리방법	자가처리량	처리량누계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자	누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 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삭 제>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신출고자인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		
사업장규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삭 제>